

## 시정권고 심의기준 위반유형 안내문

### ■ 자살관련 보도 (2018년 시정권고 287건, 전체의 22.5%)

- 유명인의 자살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자살자의 유서 전문을 공개하거나 구체적인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 등을 공개할 경우 모방 자살을 유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 자살자의 초상 및 인적사항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는 것은 자살자 및 자살자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 ① 언론은 자살 보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
  2.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 등의 묘사
  3. 자살에 사용된 약명 또는 치사량
- ② 언론은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자살 동기를 판단하는 보도를 하거나, 자살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성폭력가해자 범행수법 등 묘사 (2018년 시정권고 285건, 전체의 22.4%)

- 사건과 무관한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도할 경우 심각한 2차 피해를 유발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피해자의 폭로글을 인용할 때에도 가해자의 범행수법 및 가해발언 내용 등을 지나치게 자세히 보도하거나 선정적으로 묘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

- ②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사생활 침해 (2018년 시정권고 230건, 전체의 18.0%)

-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유명인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보도일지라도 내용의 공개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CCTV 영상 등의 자료를 게재하거나 공적 이익과 무관한 사생활을 공개할 경우 인격권 침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명인의 가족 및 지인에 대한 사적 정보를 공개하는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 ①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내용의 공개에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으로서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헌법 제17조, 언론중재법 제5조제1항).

## ■ 기사형 광고 (2018년 시정권고 136건, 전체의 10.7%)

- 광고를 기사형식으로 보도하는 경우,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위원회는 의료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등의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사형 광고를 대상으로 시정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 의료법 시행령에서는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대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신문·인터넷신문 등에 게재하면서 특정 의료기관의 주소나 전경사진 등의 정보도 함께 실어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 ■ 피의자, 피고인 신원공개 (2018년 시정권고 108건, 전체의 8.5%)

-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그의 초상이나 신원을 공개하는 보도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범죄사건 보도를 할 때에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상세하게 기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

- ①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대하거나 흉악한 범죄, 공적 인물의 사회적으로 주목을 끄는 범죄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형사사범의 집행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헌법 제27조제4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 ■ 충격·혐오감 (2018년 시정권고 73건, 전체의 5.7%)

- 지나치게 잔인하거나 비참한 장면을 기사화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충격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습니다.
-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이나 사고에 대한 영상일지라도 충격적인 장면을 여과 없이 게재할 경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성폭력피해자 신원공개 (2018년 시정권고 54건, 전체의 4.2%)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보도하면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의 초상 및 성명 등의 정보를 공개한 기사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성폭력 피해자의 초상 및 성명을 보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거주 지역 및 가정환경 등을 공개할 경우,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

- ① 언론은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 ■ 범죄수법 상세묘사 (2018년 시정권고 31건, 전체의 2.4%)

- 각종 범행수법을 상세하게 묘사하여 모방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사들에 대하여 시정권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범죄에 사용된 약품이나 치사량, 도구 및 구매처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모방범죄를 유발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

- ② 언론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폭력묘사 (2018년 시정권고 23건, 전체의 1.8%)

- 가학적·피학적인 내용, 폭력 장면, 언어폭력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여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는 기사에 대해 시정권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사건과 관련 없는 잔인한 사진을 사용하여 폭력장면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한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

언론은 가학적·피학적인 내용, 폭력 장면 또는 언어폭력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음란·포악·잔인 범죄묘사 (2018년 시정권고 21건, 전체의 1.6%)

- 범죄사건에 대해 사건의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방법을 필요이상으로 묘사한 보도에 대해서 시정권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

- ① 언론은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성관련 보도 (2018년 시정권고 13건, 전체의 1.0%)

- SNS 상의 성과 관련된 게시글을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내용을 노골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 특정사이트에 대해 보도하면서 해당 사이트의 선정적인 사진이나 영상 등을 여과 없이 게재한 보도를 대상으로 시정권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

- ①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언론은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행위를 현저하게 노골적으로 묘사한 내용
  2. 혼음, 윤간, 변태적 성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 ③ 언론은 간통, 원조교제 등 부도덕하거나 건전하지 못한 남녀관계를 합리화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보도윤리** (2018년 시정권고 7건, 전체의 0.5%)

-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도는 독자들의 판단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보도윤리 준수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

- ① 언론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침해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언론은 객관적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독자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신질환자 신원공개** (2018년 시정권고 4건, 전체의 0.3%)

- 정신질환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보도는 그의 권익을 침해하고 편견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9조>

- ① 언론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정신질환자에 관한 보도에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
- ② 제1항에 해당하더라도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공적인 관심사항인 경우 또는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북한이탈주민 신원공개** (2018년 시정권고 2건, 전체의 0.2%)

- 북한이탈주민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경우 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그의 신변상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습니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9조>

- ① 언론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도에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
- ② 제1항에 해당하더라도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공적인 관심사항인 경우 또는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피해자·목격자 신원공개 (2018년 시정권고 1건, 전체의 0.1%)

-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 및 목격자의 신원을 공개하여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한 보도에 대해서 시정권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

- ② 언론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 또는 제보자, 신고자, 고소인, 고발인, 참고인, 증인 등에 대해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